

[사 건 명] 행심 2017 - 29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정보공개 의무이행 청구

□ 청구인 : ◇◇◇◇

□ 피청구인 : ○○○○초등학교장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7. 6. 2.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정보 부존재 결정
정을 취소한다.

I.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2017. 5. 23. 작성한 △△군수와 관련된 비위 사례가 있는
지에 대해 정보공개청구서(이하 ‘이 사건 정보’ 라 한다)를 2017. 5.
30. ○○시교육청으로부터 이송 받아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하였고,
청구인에게 2017. 6. 2. 정보부존재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
다)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정보 부존재 통지에 불복하여 상기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 청구서를 2017. 6. 25. ☆☆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에 접수하였고, 2017. 7. 20. 우리위원회에 이관되었다.

II.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청구를 이행하여야 한다.

III.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4항과 관련하여 행정적 착오로 정보부존재 통지가 연기 되었던 것이지만 2017. 6. 2. 정보부존재에 대해 통지하였으며, 2017.7.19. 재차 청구인에게 정보부존재에 대해 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이 요구한 정보 공개 청구 건에 대해 보유·관리하지 않은 정보에 해당하며 이 사건 청구내용에 대하여 아는 바 없고, 청구내용이 이해할 수 없는 언어와 개인적인 내용이 난무하여 정보공개청구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IV.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1.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 제7조

2. 판 단

가.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와 답변서 및 증거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청구인은 2017. 5. 23.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7. 6. 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함에 대한 판단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조제3호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으로,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3호, 제5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을 종합해 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동 법률이 정하는 비공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공개하여야 하는바,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만일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 및 해당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참조)

V.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